

※ 첨부 6. 튀르키예 KKDİK 부속서 17

특정 위험한 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의 제조, 시장출시 및 용도에 관한 제한내용

물질, 물질그룹 또는 혼합물의 명칭	제한조건	시행 시점
1. 폴리염화테르페닐류 (PCTs)	다음의 경우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물질 - 50 mg/kg (0.005 중량%) 이상이 함유된 폐 오일을 포함하거나 장 비 내의 혼합물	2017.12.23
2. 클로로에테인 (염화비닐) CAS 번호 75-01-4 EC 번호 200-831-0	1. 어떠한 용도로든 에어로졸 압축 불활성 가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 다. 압축불활성 가스물질을 포함하는 에어로졸 용기는 시장에 출시되어 서는 안 된다.	2017.12.23
3.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 규약의 부속서 I 의거하여 다음의 위험분류 또는 카테고리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액체 및 혼합물: (a) 위험분류 2.1~2.4, 2.6 and 2.7, 2.8 타입 A 및 B, 2.9, 2.10, 2.12, 2.13 카 테고리 1 및 2, 2.14 카테고리 1 및 2, 2.15 타입 A~F; (b) 위험분류 3.1~3.6, 3.7 성기능 장애 및 촉진 또는 개선, 3.8 마취성 효과를 제외한 효과, 3.9 및 3.10; (c) 위험분류 4.1; (d) 위험분류 5.1. ◀	1. 다음의 경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a) 서로 다른 상에 의해 빛 또는 색 효과를 만들도록 의도된 장식용 완제품, 예를 들어 장식용 램프, 재떨이, b) 장난감, c) 한 명 또는 그 이상이 참가하는 게임, 또는 장식용으로도 사용되 도록 의도된 모든 완제품 2.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완제품은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3. 이 제품들이 재정적 이유로 요구되지 않는 한 착색제, 또는 향수 또 는 둘다를 포함하면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a) 일반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한 장식용 오일램프의 연료로 사용 될 수 있고, b) 흡인 유해성을 나타내어 H304로 표시되는 것. 4. 일반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한 장식용 오일램프는 터키표준위원회에서 채택한 장식용 오일램프에 관한 터키표준(TS EN 14059)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5.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공급자는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포장 및 표 시와 관련한 규정의 이행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음의 필수조건 을 충족해야 한다. (a)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한 H304로 표시된 램프오일들은 다음과 같이 보기 쉽고, 읽기 쉽게, 지워지지 않게 표시된다. “이 액체로 채워 진 램프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단 한 모금의 램프 오일 섭취 - 또는 심지어, 램프의 심지를 빠는 것은 - 생명 을 위협하는 폐 손상을 초래 할 수 있다.” (b)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한 H304로 표시된 그릴 라이터 유동액 은 읽기 쉽게, 지워지지 않게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단 한 모금의 그 릴 라이터 섭취는 생명을 위협하는 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c)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한 H304로 표시된 램프 오일과 그릴라 이터는 1리터 이하의 검정색 불투명 용기에 포장된다.	2017.12.23
4. 트리스(2,3 다이브로모프로필) 인산	1. 의복, 내의 및 린넨과 같은, 피부와 접촉하도록 의도된 직물완제품	2017.12.23

염 CAS 번호 126-72-7	내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완제품은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5. 벤젠 CAS 번호 71-43-2 EC 번호 200-753-7	1. 장난감 또는 장난감 부품에서 자유상태의 벤젠 농도가 5mg/kg(0.0005 %)보다 높을 경우, 장난감 또는 장난감 부품 내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장난감 및 장난감 부품은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3. 다음의 경우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a) 물질 b) 농도가 0.1중량% 이상인 다른 물질의 구성성분, 또는 혼합물 내 4. 그러나 제3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a) 2017년4월1일 No. 30025 공식 공보로 공표된 가솔린 및 디젤오일 환경 영향법에 규제되는 자동차 연료 (b) 가솔린 및 디젤오일 환경 영향법에서 규정한 것을 초과하는 벤젠의 방출이 허용되지 않는 산업용 공정 내 사용을 위한 물질 및 혼합물 (c) 천연가스 내 벤젠이 0.1% volume/volume 이상 농도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된다. ◀	2017.12.23
6. 석면 섬유 (a) 청석면 CAS 번호 12001-28-4 (b) 아모사 석면 CAS 번호 12172-73-5 (c) 직섬석 CAS 번호 77536-67-5 (d) 녹섬석 CAS 번호 77536-66-4 (e) 투섬석 CAS 번호 77536-68-6 (f) 온석면 CAS 번호 12001-29-5 CAS 번호 132207-32-0	1. 이와 같은 섬유 및 의도적으로 첨가된 이러한 섬유를 포함하는 완제품과 혼합물의 제조, 시장출시 및 사용을 금지한다. 2. 2008년 12월 26일 이전에 이미 설치 및/또는 출하된 제1항에 언급된 석면 섬유를 포함하는 완제품의 사용은 처리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섬유를 포함하는 완제품은 본 부속서의 부록 VII 에 따라 라벨링 되어야 한다. 3.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침해하지 않고, 앞선 적용의 배제에 따라 허용된 이러한 섬유 및 이러한 섬유를 포함하는 완제품의 시장출시 및 사용은 오직 시장에 출시되기 전 공급자들의 보장 하에 완제품이 본 부속서의 부록 VII의 규정에 따라 표시를 부착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2017.12.23
7. 트리스(아지리디닐)산화포스핀 CAS 번호 545-55-1 EC 번호 208-892-5	1. 의복, 내의 및 린넨과 같은, 피부와 접촉하도록 의도된 직물 완제품 내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완제품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고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2017.12.23
8. 폴리브로모바이페닐류, 폴리브롬화바이페닐류(PBB) CAS 번호 59536-65-1	1. 의복, 내의 및 리넨과 같은, 피부와 접촉하도록 의도된 직물 완제품 내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완제품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고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2017.12.23
9. (a) 켈라야 분말(켈라야 사포나리아) 및 사포닌을 포함한 그 유도체 CAS 번호 68990-67-0 EC 번호 273-620-4 (b) 헬레보루스 비리디스 및 헬레보루스	1. 장난감 내 또는 재채기 가루 및 악취탄 같은 것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또는 물체 내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 1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장난감 또는 혼합물 또는 제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3. 그러나, 제1, 2항은 1.5ml 이하의 액체를 포함하는 악취탄에 적용하	2017.12.23

니제르의 뿌리 분말 (c) 베라트룸 알BUM 및 베라트룸 니그룸 의 뿌리 분말 (c) 벤지딘 및 또는 유도체 CAS 번호 92-87-5 EC 번호 202-199-1 (d) o-나이트로벤즈알데하이드 CAS 번호 552-89-6 EC 번호 209-025-3 (f) 목재 분말	지 않아야 한다.	
10. (a) 황화암모늄 CAS 번호 12135-76-1 EC 번호 235-223-4 (b) 황화수소암모늄 CAS 번호 12124-99-1 (c) 폴리황화암모늄 CAS 번호 9080-17-5 EC 번호 232-989-1	1. 장난감 내 또는 재채기 가루 및 악취탄 같은 것의 구성 성분으로 사 용되도록 의도된 또는 물체 내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 1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장난감 또는 혼합물 또는 제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3. 그러나, 제1, 2항은 1.5ml 이하의 액체를 포함하는 악취탄에 적용하 지 않아야 한다.	2017.12.23
11. 브롬화초산의 휘발성 에스터류: (a) 메틸 브로모아세테이트 CAS 번호 96-32-2 EC 번호 202-499-2 (b) 에틸 브로모아세테이트 CAS 번호 105-36-2 EC 번호 203-290-9 (c) 프로필 브로모아세테이트 CAS 번호 35223-80-4 (c) 뷰틸 브로모아세테이트 CAS 번호 18991-98-5 EC 번호 242-729-9	1. 장난감 내 또는 재채기 가루 및 악취탄 같은 것의 구성 성분으로 사 용되도록 의도된 또는 물체 내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 1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장난감 또는 혼합물 또는 제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3. 그러나, 제1, 2항은 1.5ml 이하의 액체를 포함하는 악취탄에 적용하 지 않아야 한다.	2017.12.23
12. 2-나프틸아민 CAS No 91-59-8 EC 번호 202-080-4 및 염류 13. 벤지딘 CAS 번호 92-87-5 EC 번호 202-199-1 및 염류 14. 4-나이트로바이페닐 CAS 번호 92-93-3 EC 번호 202-204-7 15. 4-아미노바이페닐 크세닐아민	1. 12에서 15항까지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는 물질 및 혼합물 내에 0.1중량%이상의 농 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017.12.23

CAS 번호 92-67-1 EC 번호 202-177-1 및 염류		
16. 납 탄산염류: (a) 중성 무수 탄산염(PbCO ₃) CAS 번호 598-63-0 EC 번호 209-943-4 (b) 트라이리드-비스(탄산염)- 다이하이드록사이드 2PbCO ₃ -Pb(OH) ₂ CAS 번호 1319-46-6 EC 번호 215-290-6	1. 페인트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물질이나 혼합물은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2. 그러나, 역사적인 건물과 그 인테리어 및 예술작품의 복원 및 유지보수에 대한 물질 및 혼합물의 사용은 본 조항에서 제외된다.	2017.12.23
17. 납 황산염류: (a) PbSO ₄ CAS No 7446-14-2 EC No 231-198-9 (b) Pb _x SO ₄ CAS No 15739-80-7 EC No 239-831-0	1. 페인트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물질이나 혼합물은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2. 그러나, 역사적인 건물과 그 인테리어 및 예술작품의 복원 및 유지보수에 대한 물질 및 혼합물의 사용은 본 조항에서 제외된다.	2017.12.23
18. 수은 화합물류	1. 다음 용도로 사용하도록 의도된 물질 및 혼합물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a) 다음과 같은 물체에 미생물, 식물 또는 동물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 - 보트 선체, - 우리, 부표, 그물 및 물고기나 조개 양식을 위해 사용되는 다른 장치 또는 장비, -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물속에 잠기는 장치 또는 장비 (b) 목재의 보존; (c) 제조하도록 의도된 튼튼한 산업용 직물의 보강 (d) 용도와는 관계없이 산업용수의 처리	2017.12.23
18a. 수은 CAS 번호 7439-97-6 EC 번호 231-106-7	1. 다음의 경우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a) 체온계 (b)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기 위한 다른 측정 장치(압력계, 기압계, 혈압계, 온도계 외에 체온계) 2. 1(b)항의 제한은 아래에 적용되지 않는다. (a) 본 규제의 공포일 기준 60년 초과하는 측정장비 (b) 2018년 10월 3일까지 기압계((a)항의 기압계 제외) 3. 2018년 12월 31일 이후, 다음의 산업 또는 전문적인 용도의 수은이 함유된 측정기기는 시장에 출시 할 수 없다. (a) 기압계 (b) 습도계 (c) 압력계 (d) 혈압계	2017.12.23

	(e) 맥파계로 사용되는 strain gauge (f) 장력계 (g) 온도계와 비전자식 온도측정장치 이 조항은 또한 수은을 채우려는 경우, 비어있는 시장에 놓인(a)~(g)까지의 측정장비에도 적용된다. 4. 3항의 제한은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a) 혈압계 (i) 본 법규의 공표일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전염병학적인 연구 (ii) 수은이 없는 혈압계의 임상 확인 연구의 참고자료 (b)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험 규격에 의해 수은 온도계가 필요한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c) 백금 저항 온도계의 검증에 사용되는 수은의 삼중점 셀 5. 2018년 12월 31일 이후, 산업 또는 전문적인 용도로 수은을 사용하는 다음의 측정기기는 시장에 출시 할 수 없다. (a) 수은 비중병 (b) 연화점(softening point)를 측정하기 위한 수은 계량 기기 6. 위의 3번 및 7번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본 법규 공표일에 60년 초과된 측정기기 (b) 문화적 또는 역사적인 이유로 전시되고 있는 측정기기	
19. 비소 화합물류	1. 다음과 같은 물체에 미생물, 식물 또는 동물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의도된 물질 및 혼합물의 구성성분으로는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a) 보트 선체 b) 우리, 부표, 그물 및 물고기나 조개 양식을 위해 사용되는 다른 장치 또는 장비 c)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물속에 잠기는 장치 또는 장비 2. 용도와는 관계없이 산업 용수의 처리 용도로 의도된 물질 및 혼합물의 구성성분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 목재의 보존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렇게 처리된 목재는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4. 제3항으로부터 적용배제의 방법에 의하여: (a) 목재 보존을 위한 물질 및 혼합물에 대하여: 이것들이 구리, 크롬, 비소(CCA) 형태 C의 무기화합물 용액인 경우, 오직 목재에 주입하기 위해 진공 또는 압력을 사용하는 산업용 설비에만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처리된 목재는 보존제가 고정되기 전까지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b) (a)항에 따라 산업용 설비 내 CCA 용액으로 처리된 목재는 목재의 구조적 무결성이 인간 또는 가축 안전성을 위해 요구되고 사용기간 동안 일반 대중에 의해 피부접촉이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전문용 및 산업용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 - 공공 및 농업용 건물, 사무용 건물, 산업용지 내의 구조용 재목, - 교량 및 교량공사용,	2017.12.23

	- 담수 및 기수 지역의 건축용 재목, 예를 들어 방파제 및 교량, - 방음벽용, - (눈)사태 방지용, - 고속도로 안전울타리 및 방벽용, - 가축 담장 말뚝용 나무껍질이 벗겨진 둥근 침엽수, - 흙막이 구조물용, - 송전탑 및 통신탑용, - 지하철 침목용. (c)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포장, 표시에 관한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공급자는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시장 출시되는 모든 처리된 목재에 개별적으로 "전문용 및 산업용 설비를 위해서만 사용, 비소 함유"라고 표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팩 형태로 시장출시 되는 모든 목재는 "이 목재를 취급할 경우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이 목재를 절단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가공할 때, 방진마스크와 눈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이 목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허가된 기업을 통해 유해물질로 처리하십시오"라고 적힌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㉔) (a)항에 언급된 처리된 목재는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모든 목적의 주택 공사, - 반복적인 피부접촉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용도, - 해수 내, - (b)항에 따라 가축 담장 말뚝 및 구조적 용도 이외의 농업용 목적, - 사람 및/또는 동물이 소비하도록 의도된 중간물 또는 완제품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용도의 처리된 목재 5. 2014년 1월 1일 전에 공동체에서 사용 중이었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에 출시되었던 비소화합물류로 처리된 목재는 사용기간(service life)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고 계속 사용 되어질 수 있다. 6. 2014년 1월 1일 전에 사용 중이었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에 출시되었던 CCA type C로 처리된 목재는: - 제4항(b), (c) 및 (㉔)호에 등재된 용도에 속하는 조건에 따라 사용 또는 재사용될 수 있고, - 제4항(b), (c) 및 (㉔)호에 등재된 용도에 속하는 조건에 따라 시장에 출시 될 수 있다. 7. 2014년 1월 1일 전에 사용 중이었던 CCA 용액의 다른 type으로 처리된 목재를 다음 조건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제4항(b), (c) 및 (㉔)호에 등재된 용도에 속하는 조건에 대해 사용 또는 재사용될 수 있고, - 제4항(b), (c) 및 (㉔)호에 등재된 용도에 속하는 조건에 대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	
20. 유기주석 화합물류	1. free association paint에서 살생물제로 작용하는 경우, 물질 및 혼합물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2. 다음과 같은 물체에 미생물, 식물 또는 동물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	2017.12.23

	기 위해 살생물제로 작용하는 물질 및 혼합물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a) 바다, 연안, 강어귀, 내륙수로 및 호수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길이와 상관없는 모든 선박 (b) 우리, 부표, 그물 및 물고기나 조개 양식용 다른 장치 또는 장비 (c)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물속에 잠기는 장치 또는 장비. 3. 산업용수의 처리에 사용하도록 의도된 물질 및 혼합물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4. 삼-치환 유기주석 화합물류 (a) 완제품 또는 그것의 부품 내 주석의 농도가 0.1중량%를 초과한다면, 트라이뷰틸틴(tributyltin-TBT) 화합물과 트라이페닐틴(triphenyltin-TPT) 화합물 같은 삼-치환 유기주석 화합물류는 완제품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b) (a)항을 따르지 않는 완제품은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5. 다이뷰틸틴(Dibutyltin-DBT) 화합물류 (a) 혼합물 또는 완제품 또는 그것의 부품 내 주석의 농도가 0.1중량%를 초과한다면, 다이뷰틸틴(Dibutyltin-DBT) 화합물은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한 혼합물 또는 완제품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b) (a)항을 따르지 않는 완제품 및 혼합물은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c) 적용배제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한 다음의 완제품과 혼합물은 (a) 와 (b)항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 1액 형 상온경화 형 과 2액 형 상온경화 형 밀폐제(RTV-1 및 RTV-2 밀폐제) 및 접착제 - 완제품에 적용될 경우 촉매제로서 작용하는 DBT 화합물류를 함유하고 있는 페인트와 코팅제 - 경질 PVC와 공중합 또는 그 자체적의 연질 PVC 프로파일 - 건축물 지붕과 외관용 보호자재, 배수구와 그 부속품, 옥외용 물 관 (d) 적용배제의 방법에 의하여, Turkish Food Codex Substances and Materials In Contact With Food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dated 29/12/2011 and numbered 28157 (3rd bis) 에서 규정된 완제품과 물질들은 (a) 와 (b)항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6. 다이옥틸틴(Dioctyltin-DOT) 화합물 (a) 완제품 또는 그것의 부품 내 주석의 농도가 0.1중량% 초과한다면, 다이옥틸틴(DOT) 화합물은 일반대중에게 공급하거나 다음의 용도로 완제품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피부와 접촉하도록 만들어진 직물완제품, - 장갑, - 피부와 접촉하도록 만들어진 신발류 또는 그 부속품, - 벽지와 바닥재, - 어린이보호 완제품 - 여성용 위생용품,	
--	--	--

	- 기저귀, - 2액 형 상온경화 형 몰딩 키트(RTV-2 몰딩 키트). (b) Articles not complying with point (a) shall not be placed on the market, except for articles that were already in use.	
21. 다이-μ-옥소-다이-n-뷰틸스탄니오 하이드록시보레인/다이뷰틸틴 수소 봉산 염 C8H19BO3Sn (DBB) CAS번호 75113-37-0 EC번호 401-040-5	1. 물질 또는 0.1중량% 이상의 농도로 혼합물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2. 그러나 이 물질이 더 이상 0.1% 이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단지 완제품으로 변환할 목적인 경우, 위의 조항은 이 물질(DBB) 또는 그것을 포함하는 혼합물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2017.12.23
22. 펜타클로로페놀 CAS번호 87-86-5 EC번호 201-778-6 염류 및 에스터류	다음의 경우 시장에 출시 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물질 - 농도가 0.1중량% 이상인 다른 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	2017.12.23
23. 카드뮴 CAS 번호 7440-43-9 EC 번호 231-152-8 및 화합물류	본 단락을 위해, 각 괄호 안에 명시된 code와 chapter는 일반 관세표 (GTIP) 의 관세 및 통계 명명법의 code와 chapter이다. 1. 다음과 같은 합성유기고분자(플라스틱 재료로 언급된 이후)로부터 생산된 혼합물과 완제품 내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염화비닐의 고분자류 또는 공중합체류 (PVC) [3904 10] [3904 21] - 폴리우레탄 (PUR) [3909 50] - 착색된 마스터배치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제외한 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 [3901 10] - 아세트산 셀룰로오스 (CA) [3912 11][3912 12] - 아세트산 뷰티르산 셀룰로오스 (CAB) [3912 11][3912 12] - 에폭시 수지류 [3907 30] - 멜라민-포름알데하이드 (MF) 수지류 [3909 20] - 우레아-포름알데하이드 (UF) 수지류 [3909 10] - 불포화 폴리에스터류 (UP) [3907 91]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3907 60] - 폴리뷰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BT) - 투명/일반 용도의 폴리스타이렌 [3903 11] - 아크릴로나이트릴 메타크릴산메틸 (AMMA) - 가교 폴리에틸렌 (VPE) - 고강도 폴리스타이렌 - 폴리프로필렌 (PP) [3902 10] (a) 카드뮴 농도(Cd 금속으로 표현된)가 플라스틱 재료의 0.01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플라스틱 재료로부터 생산된 혼합물과 완제품은 시장출시 되어서는 안 된다. (b) 예외적으로 첫 번째 단락의 (a)항은 2015년 5월 2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완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카드뮴 함유량(Cd 금속으로서 표현된)이 0.01중량% 이상인 [3208][3209]코드를 가진 페인트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아연 함량	2017.12.23

	이 10중량%를 초과하는 페인트에서 카드뮴 함유량(Cd 금속으로서 표현된)이 0.1중량% 이상 사용할 수 없다. 페인팅된 제품에서 페인트 내 카드뮴(Cd 금속으로서 표현된) 이 0.1중량% 이상일 경우 페인팅 된 제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3. 적용 배제의 방법에 의하여, 제1항과 제2항은 안전상의 이유로 카드뮴이 포함된 혼합물로 착색 되어진 완제품에 적용하지 않는다. 4. 적용 배제의 방법에 의하여, 제1항의 (a)는 다음에 적용하지 않는다. - PVC 폐기물에서 생성된 혼합물, 이하 “회수된 PVC”로 언급됨 - 아래의 경질폴리염화비닐(rigid PVC) 용도 내에서 카드뮴 농도(Cd 금속으로서 표현된)가 플라스틱 재료의 0.1중량%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회수된 PVC가 포함된 혼합물과 완제품 (a) 건축물용 프로파일(profile)과 경질 강판(rigid sheet) (b) 문, 창문, 셔터(shutter), 벽, 블라인드, 담장, 지붕(배수로) (c) 갑판, 테라스 (ㄷ) 케이블 덕트 (d) 회수된 PVC가 다층 파이프의 중간층에 사용되거나 제1항에 따라서 새롭게 생산된 PVC의 층에 전체적으로 덮여지는 경우, 방수용 (non-drinking water) 파이프 공급자는 반드시 처음 회수된 PVC를 포함하는 혼합물과 완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분명하고 읽기 쉽게, 그리고 지울 수 없게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회수된 PVC 포함” 또는 아래의 그림을 표시해야 한다.: 5. 본 단락을 위해, "카드뮴 도금"은 금속성 표면에 금속성 카드뮴의 전착 또는 코팅을 의미한다. 다음에 열거된 분야/용도에 사용된 금속성 완제품 또는 완제품의 구성 요소에 카드뮴 도금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a)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 및 기계류: - 식품 생산 [8210] [8417 20] [8419 81] [8421 11] [8421 22] [8422] [8435] [8437] [8438] [8476 11] - 농업 [8419 31] [8424 81] [8432] [8433] [8434] [8436] - 냉장 및 냉동 [8418] - 인쇄 및 제본 [8440] [8442] [8443] (b) 다음의 생산용 장비 및 기계류: - 가정용 제품 [7321] [8421 12] [8450] [8509] [8516] - 가구 [8465] [8466] [9401] [9402] [9403] [9404] - 위생용품 [7324]	
--	--	--

	- 중앙난방 및 에어컨 시설 [7322] [8403] [8404] [8415] 어떠한 경우에도, 용도 또는 의도된 최종목적이 무엇이든, 상기 (a)항 및 (b)항에 열거된 영역/용도 내에서 사용되는 카드뮴 도금된 완제품 또는 그런 완제품의 구성요소 및 상기 (b)항에 열거된 영역 내에서 제조 되는 완제품의 시장출시는 금지된다. 6. 제5항에 언급된 조항은 하기 (a)항 및 (b)항에 열거된 영역/용도 내에서 사용되는 카드뮴 도금된 완제품 또는 그런 완제품의 구성요소 및 하기 (b)항에 열거된 영역 내에서 제조되는 완제품에 적용 가능하다. (a) 다음의 생산을 위한 장비 및 기계류: - 종이 및 판 [8419 32] [8439] [8441] - 직물 및 의류 [8444] [8445] [8447] [8448] [8449] [8451] [8452] (b) 다음의 생산을 위한 장비 및 기계류: - 산업용 취급 장비 및 기계류 [8425] [8426] [8427] [8428] [8429] [8430] [8431] - 육로 및 농업용 차량 [제87장] - 철도 차량 [제86장] - 선박 [제89장] 7. 그러나 제5항 및 제6항의 제한은 다음의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 높은 안전기준의 적용이 요구되는 항공, 우주, 채광, 근해 및 원자력 부문과 육로 및 농업용 차량, 철도 차량, 선박의 안전장치에 사용되는 완제품 및 그 완제품의 구성요소 - 설치된 장치에 대해 요구되는 신뢰성 보장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사용 분야에서의 전기적 접촉 8. 경납(brazing filler)에 0.01중량% 이상의 농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경납(brazing filler)은 카드뮴 농도(Cd 금속으로 표현된)가 0.01 중량% 이상일 경우,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항에서 경납땜(brazing)은 합금을 사용한 결합 기술과 450°C 이상의 온도에 맡겨진 것을 의미한다. 9. 적용 배제의 방법에 의하여, 제8항은 방어 시설과 항공우주산업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된 경납(brazing filler)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0. 농도가 금속 내에서 0.01중량% 이상일 경우,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i) 금속 비드(beads)와 장신구를 만들기 위한 금속 성분 (ii) 장신구와 모조 장신구 완제품, 헤어 악세사리, 아래 금속의 부품 - 팔찌, 목걸이, 반지 - 피어싱 장신구 - 손목 시계, 손목 의류 - 브로치, 단추 11. 적용 배제의 방법에 의하여, 제10항은 2015년 5월 2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되는 완제품과 2015년 5월 21일에 50년 이상 된 장신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4. 모노메틸-테트라클로로다이페닐 메	1. 물질 또는 혼합물에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물	2017.12.23

탄 상품명: Ugilec 141 CAS 번호 76253-60-6	질을 포함하는 완제품은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2. 적용배제의 방법에 의하여,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a) 본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에 이미 공장 및 기계류가 운영중인 경우, 그 공장 및 기계류가 처분될 때까지.	
25. 모노메틸-다이클로로-다이페닐 메탄 상품명: Ugilec 121 Ugilec 21	1. 물질 또는 혼합물에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물질을 포함하는 완제품은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2017.12.23
26. 모노메틸-다이브로모-다이페닐 메탄 브로모벤질브로모톨루엔, 이성질체류 혼합물 상품명: DBBT CAS 번호 99688-47-8	1. 물질 또는 혼합물에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물질을 포함하는 완제품은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2017.12.23
27. 니켈 CAS 번호 7440-02-0 EC 번호 231-111-4 및 그 화합물류	1.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a) post 조립품으로부터 배출되는 니켈의 비율이 $0.2\mu\text{g}/\text{cm}^2/\text{주}$ (이동 한계) 미만인 한, 구멍을 뚫은 귀 또는 인체의 다른 부분에 뚫은 구멍에 삽입되는 모든 post 조립품 내; (b)다음과 같이 피부와 직접 및 장기간 접촉하도록 의도된 완제품 내 - 귀고리, - 목걸이, 팔찌, 체인, 발목 장식, 반지, - 손목시계 케이스, 손목시계 밴드, 손목시계 타이트너, - 의복에 사용되는 경우, 리벳 단추, 타이트너, 리벳(대갈 못), 지퍼, 금속마크, 피부와 직접 및 장기간 접촉하는 이런 완제품의 부품으로부터 배출되는 니켈의 비율이 $0.5\mu\text{g}/\text{cm}^2/\text{주}$ 를 초과하는 경우 (c) 니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코팅이 완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에서 적어도 2년간 피부와 직접 및 장기간 접촉하는 완제품의 부품으로부터 배출되는 니켈의 비율이 $0.5\mu\text{g}/\text{cm}^2/\text{주}$ 이하라는 것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한 니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코팅을 한 (b)항에 언급된 완제품 내 2. 제1항에 제시된 요건을 따르지 않는 한, 제1항의 대상인 완제품은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3. 터키표준위원회(TSE)에 의해 채택된 표준은, 완제품이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시험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017.12.23
28.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포장 규정의 부속서VI의 Part3에 있는 발암성 범주 1A 또는 1B로 분류되는 물질(표 3.1) 또는 다음에 열거된 물질: — 부록 1에 등재된 발암성 범주 1A(표 3.1) — 부록 2에 등재된 발암성범주1B(표 3.1)	이 부속서의 다른 부분을 침해하지 않고, 다음은 항목 28부터 30에 적용해야 한다. 1. 다음의 경우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물질 - 다른 물질의 구성성분 - 혼합물 물질이나 혼합물에서 각각의 농도가 아래 기술한 것 이상일 경우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해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포장규정 부속서 VI 의 Part 3에	2018.12.31

29.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레벨링, 포장 규정의 부속서 VI 의 Part3 에 등재된 생식세포 돌연변이성 범주 1A 또는 1B로 분류(표 3.1)되거나 다음에 열거된 물질: — 부록 3에 등재된 돌연변이성 범주 1A(표3.1) — 부록 4에 등재된 돌연변이성 범주 1B(표 3.1) 30.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레벨링, 포장 규정의 부속서 VI 의 Part3 에 등재된 생식독성 범주 1A 또는 1B(표3.1)에 등재된 물질 및 다음에 열거된 물질: — 부록 5에 등재된 생식 기능, 생식력 또는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생식독성 범주 1A(표3.1) — 부록 6에 등재된 생식기능, 생식력 또는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생식독성 범주 1B	기술된 특정 농도 한계, 또는 -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포장규정 부속서 I 의 Part 3에 기술된 특정 농도 한계 위험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공급자는 이런 물질 및 혼합물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고 읽기 쉽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한다. "전문사용자로 사용을 제한함" 2. 적용배제의 방법에 의하여, 제1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a) 19/01/2005 #25705의 공보로 발표된 인간 의약품 인허가규정, 12/08/2005 #25904의 공보로 발표된 인간 의약품의 포장 및 라벨링 규정, 24/12/2012 #28152의 공보로 발표된 수의 의약품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수의용품 (b) 23/05/2005 #25823 의 공보로 발표된 화장품 규정에서 정의된 화장품 (c) 다음의 연료 및 오일제품 - 30/11/2013 #28837의 공보로 발표된 배기가스규제 및 가솔린과 디젤연료의 품질규제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연료 - 이동성 또는 고정된 연소설비 내 연료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석유 제품 , - 밀폐계(예, 액화가스 용기)용 연료	
31. (a) 크레오소트 ; 세척오일 CAS 번호 8001-58-9 EC 번호 232-287-5 (b) 크레오소트 오일 ; 세척오일 CAS 번호 61789-28-4 EC 번호 263-047-8 (c) 증류액(콜타르), 나프탈렌 오일류 ; 나프탈렌 오일 CAS번호 84650-04-4 EC 번호 283-484-8 (c) 크레소트오일, 아세나프텐 분류 ; 세척오일 CAS 번호 90640-84-9 EC 번호 283-484-8 EC 번호 292-605-3 (d) 증류액(콜타르), 상부 ; 중질 안트라센 오일 CAS 번호 65996-91-0 EC 번호 266-026-1 (e) 안트라센 오일	1. 물질 또는 혼합물이 목재 처리용으로 의도된 경우 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으로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제1항으로부터 적용배제의 방법에 의하여, (a) 물질 및 혼합물은 오직 다음의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본래의 장소에서 재처리를 하기 위해 산업용 설비에서, 또는 작업자 보호에 관한 공동체 법규에 따라 허가된 전문가에 의해 목재 처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i) 농도가 50 mg/kg(0.005중량%) 미만인 벤조[a]피렌, 그리고 (ii) 3중량% 미만의 농도에서 물로 추출이 가능한 페놀류 산업용 설비에서, 또는 전문가에 의해 목재 처리용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물질 및 혼합물은: - 20리터 이상의 포장 단위로만 시장에 출시될 수 있고, -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야 한다.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침해하지 않고, 공급자는 이러한 물질 및 혼합물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고 읽기 쉽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한다. "오직 산업용 설비 또는 전문적인 취급 시에만 사용하십시오." (b) 제a호에 따라 산업용 설비 또는 전문가에 의해 처리된, 시장에 첫	2018.12.31

CAS 번호 90640-80-5 EC 번호: 292-602-7 (f) 타르산, 석탄, 천연; 천연 페놀 CAS 번호 65996-85-2 EC 번호 266-019-3 (g) 크레소트, 나무 CAS 번호 8021-39-4 EC 번호 232-419-1 (g) 저온 타르오일, 알칼리성 ; 추출잔 류물(석탄), 저온 알칼리성 콜타르 CAS 번호 122384-78-5 EC 번호 310-191-5	출시되었거나 본래 장소에서 재처리 되는 목적은 전문가용 및 산업용으로 허가된다, 예를 들어 철로, 송전 및 통신, 울타리, 농업목적(예, 지지 말뚝), 항만, 수로 (c) 시장출시에 관한 제1항의 금지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31(a)부터 (g)에 등재된 물질로 처리되고 재사용을 위해 중고품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목적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제2항 제b호 및 제c호에 따라 언급된 처리된 목적은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어떤 목적으로든지 관계없이 빌딩 내부 - 장난감 내, - 놀이터 내, - 빈번한 피부 접촉의 위험이 있는 공원, 정원, 실외 레크리에이션 및 레저용 시설 내, - 피크닉 테이블 같은 정원용 가구의 제조, - 다음의 제조, 사용 및 모든 재처리를 위해: - 재배 목적으로 의도된 컨테이너, - 인간이나 동물이 소비하는 원자재, 중간재 또는 완제품과 접촉할 수 있는 포장, - 상기한 완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다른 물질	
32. 클로로폼 CAS 번호 67-66-3 EC 번호 200-663-8 34. 1,1,2-트리클로로에탄 CAS 번호 79-00-5 EC 번호 201-166-9 35. 1,1,1,2,2-테트라클로로에탄 CAS 번호 79-34-5 EC 번호 201-197-8 36. 1,1,1,2-테트라클로로에탄 CAS 번호 630-20-6 37. 펜타클로로에탄 CAS 번호 76-01-7 EC 번호 200-925-1 38. 1,1-다이클로로에틸렌 CAS 번호 75-35-4 EC 번호 200-864-0	이 부속서의 다른 부분을 침해하지 않고, 다음은 항목 32부터 항목 38에 적용해야 한다. 1. 다음의 경우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 물질 - 다른 물질의 구성성분, 또는 농도가 0.1중량% 이상인 혼합물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거나 표면 세척 및 섬유세척과 같은 확산 용도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물질 및 혼합물의 경우 2.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규정의 적용을 침해하지 않고, 공급자는 0.1중량% 이상의 농도를 포함하는 물질 및 혼합물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고 읽기 쉽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한다. "산업용 설비 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적용배제의 방법에 의하여, 이 조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a) 19/01/2005 #25705의 공보로 발표된 인간 의약품 인허가규정, 12/08/2005 #25904의 공보로 발표된 인간 의약품의 포장 및 라벨링 규정, 24/12/2012 #28152의 공보로 발표된 수의 의약품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수의용품 의약품 및 수의용 제품 (b) 12/08/2005 #25823의 공보로 발표된 화장품 규정에서 정의된 화장품	2018.12.31
40.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포	1. 다음과 같은 연회 및 장식 목적으로 일반대중에 공급하기 위한 에어	2018.12.31

장에 대한 규정 부속서 VI의 Part 3에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가연성 가스 범주 1 또는 2, 가연성 액체 범주 1, 2 또는 3, 가연성 고체 범주 1 또는 2, 물과 접촉하여 불꽃을 내뿜는 가스 물질 및 혼합물, 범주 1, 2 또는 3, 인화성 액체 범주 1 또는 인화성 고체 범주 1	로줄 발생기 내에서 물질 자체 또는 혼합물 형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성 장신구 - 인공 눈 및 서리 - 방귀소리 나는 쿠션 - 실리 스트링 에어로줄 - 모조 배설물 - 파티용 뿔 - 장식용 눈송이 및 포말 - 인공 거미집 - 약취탄 2. 위험물질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공동체 규정의 적용을 침해하지 않고, 공급자는 상기된 에어로줄 발생기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고 읽기 쉽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한다.: "전문사용자만 사용하십시오." 3. 적용배제의 방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30/11/2000 #24246 공보에 발표된 에어로줄 컨테이너 규정 8항에 언급된 에어로줄 발생기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4.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에어로줄 발생기는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41. 헥사클로로에탄 CAS 번호 67-72-1 EC번호 200-666-4	1. 비철금속의 제조 또는 가공을 위한 물질 및 혼합물은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018.12.31
43. 아조염료류	1. 하나 이상의 아조기의 환원성 분열에 의해, 부록 10에 열거된 시험 방법에 따라 감지할 수 있는 농도, 즉 완성된 완제품 또는 그것의 염색된 부분에 30mg/kg (0.003중량%)을 초과하는 농도로, 부록 8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방향족 아민을 방출할 수 있는 아조염료는 다음과 같이 사람의 피부 또는 구강에 직접 및 장기간 접촉할 수 있는 직물 및 가죽 완제품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a) 의류, 침구류, 수건, 부분 가발, 가발, 모자, 기저귀 및 기타 위생제품, 침낭, b) 신발, 장갑, 손목시계 가죽 끈, 핸드백, 지갑, 서류가방, 의자 커버, 목에 거는 지갑, c) 직물 또는 가죽장난감 및 직물 또는 가죽의복을 포함하는 장난감, ㄷ) 최종소비자를 위한 방사 및 섬유. 2. 더욱이, 제1항에 제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1항에 언급된 직물 및 가죽 완제품은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3. 부록 9의 "아조염료 목록"에 포함된 아조염료는 직물 및 가죽 완제품을 염색하기 위해 물질 자체로 또는 농도가 0.1중량%를 초과하는 혼	2017.12.23

	합물로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45. 다이페닐에테르, 옥타브로모 유도체 C ₁₂ H ₂ Br ₈ O	1. 다음의 경우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 물질 - 다른 물질의 구성성분, 또는 0.1중량%를 초과하는 혼합물 2. 완제품 또는 그것의 난연 처리된 부품이 이 물질을 0.1중량%를 초과하는 농도로 포함하는 경우,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3. 적용배제의 방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동체에서 사용된 완제품 - 22/05/2012 #28300 공포에서 발표된 폐 전기전자장치의 제한규정의 범주에 포함된 전기 및 전자 장치	2018.12.31
46. (a) 노닐페놀 C ₆ H ₄ (OH)C ₉ H ₁₉ CAS 번호 25154-52-3 EC 번호 246-672-0 (b) 노닐페놀 에폭실레이트류 (C ₂ H ₄ O) _n C ₁₅ H ₂₄ O	다음의 목적으로, 물질 또는 0.1중량% 이상의 농도로 혼합물 내에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1) 다음을 제외한 산업용 및 공공시설용 청소 - 세척용 액체가 재생되거나 소각되는 경우, 관리되는 폐쇄형 건조세탁 시스템 - 세척용 액체가 재생되거나 소각되는 경우, 특별 취급을 요하는 청소 시스템. (2) 집 청소 (3) 다음을 제외한 식물 및 가죽 가공 - 폐수로 배출되지 않는 가공, - 가공용수가 생물학적 폐수처리(양피의 유지 제거)에 앞서 완벽하게 유기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전처리 되는 경우, 특별취급이 요구되는 시스템 (4) 농업용 유두 침적을 위한 유화제 (5) 다음을 제외한 금속 세공 : 세척용 액체가 재생되거나 소각되는 경우, 조절된 밀폐계에 사용 (6) 펄프 및 종이 제조 (7) 화장품 (8) 다음을 제외한 기타 개인용품: 피임용 살정자제; (9) 살충제 및 살생물제 내의 부형제	2017.12.23
46a. 노닐페놀 에폭실레이트류 (NPE) (C ₂ H ₄ O) _n C ₁₅ H ₂₄ O	1. 일반적인 수명 동안 일상적으로 수세척이 예상되는 식물 제품(Textile Fibers) 또는 식물 제품의 각각의 부분에 0.01중량% 이상 함유될 경우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2. 중고 식물 제품 또는 NPE를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된 식물로 생산된 식물 제품은 동 규제에서 제외한다. 3. 단락 1과 2의 목적에 대하여 ‘식물제품(Textile Fibers)’이란 식물 섬유가 80중량% 이상 포함된 비가공/반가공/가공제품을 의미한다. 또한 의류, 악세서리, 인테리어 식물, 섬유, 실, 천 및 편물 패널과 같은 제품을 포함하는 80중량% 이상으로 구성된 부분을 포함하는 다른 제품을 의미한다.	2021.12.31
47. 크롬 VI 화합물류	1. 수소화 처리 시, 시멘트의 총 건조 무게의 2 mg/kg(0.0002%)를 초	2021.12.31

	과하는 수용성 크롬(VI)을 포함하는 경우, 시멘트 및 시멘트 함유 혼합물은 사용 또는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2. 환원제가 사용되는 경우, 위험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침해하지 않고, 공급자는 시멘트 또는 시멘트 함유 혼합물의 포장에 환원제의 활성도를 유지시키고, 수용성 크롬(VI)의 양을 제1항에서 규정한 양 미만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보관 조건 및 기간뿐만 아니라 포장날짜에 대한 정보를 잘 보이고 읽기 쉽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도록 명시해야 한다. 3. 적용배제의 방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시멘트 및 시멘트 함유 혼합물이 기계에 의해 취급되고 피부 접촉 가능성이 없는 밀폐되도록 조절된 전자동 공정에서의 사용 및 시장출시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4. 제 1항과 관련하여 시멘트와 시멘트를 포함하는 혼합물에 수용성 크롬(VI)의 함량을 시험하기 위한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에 의해 채택된 표준으로 시험해야 한다. 5. 가죽의 총 건조 중량 기준 3mg/kg(0,0003 중량%) 이상 6가 크롬을 함유하고 피부에 접촉 가능한 가죽 제품(leather article)은 시장에 출시해서는 안 된다. 6. 가죽의 총 건조 중량 기준 3mg/kg(0,0003 중량%)이상 6가 크롬을 함유하고 피부에 접촉 가능한 가죽을 포함하는 제품(article containing leather parts)은 시장에 출시해서는 안 된다. 7. 상기 5번과 6번 항목은 본 규정의 발행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8. 톨루엔 CAS 번호 108-88-3 EC 번호 203-625-9	1. 물질이나 혼합물이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한 접착제 및 스프레이 페인트 내에 사용될 경우, 물질 또는 0.1중량% 이상의 농도로 함유된 혼합물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2018.12.31
49. 트리클로로벤젠 CAS 번호 120-82-1 EC 번호 204-428-0	1.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0.1중량% 이상의 농도로 함유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 합성 중간체, 또는 - 염소화 반응을 위한 가공 용매, 또는 - 1,3,5-트라이아미노-2,4,6-트라이나이트로벤젠(TATB)의 제조	2018.12.31
50. 다환식-방향족 탄화수소류 (PAH) (a) 벤조(a)피렌 (BaP) CAS 번호 50-32-8 (b) 벤조(e)피렌 (BeP) CAS 번호 192-97-2 (c) 벤조(a)안트라센 (BaA) CAS 번호 56-55-3 (d) 크라이센 CAS 번호 218-01-9 (e) 벤조(b)플루오란센	1. 다음을 포함하는 경우 신전유는 타이어 또는 타이어 부품 생산을 위해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 BaP가 1mg/kg(0.0001 중량%) 초과, 또는 - 등재된 모든 PAH의 합이 10mg/kg(0,001 중량%) 초과 상기 1번의 하위 첫번째 항목에서 언급된 제한조건을 입증하기 위해 EN 16143:2013 (석유 제품 — 신전유 내 선택된 방향족탄화수소 (PAH)와 벤조(a)피렌(BaP)의 함유량 결정 - 두차레의 LC 세척과 GC/MS 분석을 사용한 공정)이 시험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PCA 추출물과 함께 측정된 값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BaP 및 열거된 PAH의 한계값을 따르는 것이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해 6개월마다 한번 또는 주요 운용상의 변경 때마다, 어느 쪽이든 빠른 쪽으로 관리	2017.12.31

(BbFA) CAS 번호 205-99-2 (f) 벤조(j)플루오란센 (BjFA) CAS 번호 205-82-3 (g) 벤조(k)플루오란센(BkFA) CAS 번호 207-08-9 (h) 다이벤조(a, h)안트라센 (DBA_hA) CAS 번호 53-70-3	되는 경우, 석유탄화 표준 IP346: 1998(사용되지 않은 윤활기유 및 아스팔텐이 없는 석유 분류 내의 PCA의 결정. 다이메틸설파이드 추출 굴절률 방법)에 따라 측정된, 다환식 방향족(PCA) 추출물이 3중량% 미만인 경우, 이 한계값은 유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2. 더욱이, 본 규정의 적용일 이후에 제조되는 타이어 및 재생 타이어용 접지면은 1항에 명시된 한계를 초과하는 신전유를 포함할 경우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경화고무 화합물이 ISO 21461(경화고무, 경화고무 화합물에 함유된 오일의 방향족의 결정)에 의해 측정 및 계산된 0.35% Bay 양자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 한계는 유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재생 타이어용 접지면이 제1항에 언급된 한계를 초과하는 신전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적용배제의 방법에 의하여, 제2항은 재생 타이어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4. 본 “타이어”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에 의해 규제되는 운송수단용 타이어를 의미할 것이다. - 자동차와 트레일러의 허가의 체계를 확립한 자동차 및트레일러 형식허가 규정 (28/06/2009 #27272 관보에서 발표) - 농업 및 삼림 트랙터 및 트레일러의 형식허가 규정(08/06/2008 #26900 관보에서 발행) 및, - 2륜 또는 3륜 자동차 형식허가 규정 (03/12/2004 # 25679 관보에서 발행) 5. 정상적/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피부/구강에 직접적이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접촉될 수 있는 고무/플라스틱 제품/부품은 등재된 PAHs 중 어떤 PAHs 물질이라도 1mg/kg (0,0001중량%) 이상 함유한 경우, 일반 대중들에게 판매를 위한 시장 출시는 금지된다. 다음의 부품들이 포함된다 - 자전거, 골프채, 라켓과 같은 스포츠 용품 - 가정용 식기, 카트(trolleys), 보행 보조기(walking frames) - 가정용(domestic use) 도구 - 옷, 신발, 장갑, 스포츠웨어 - 시계줄, 손목 밴드, 마스크, 헤어 밴드 6. 정상적/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피부/구강에 직접적이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접촉될 수 있는 고무/플라스틱 제품/부품 중 움직이는 장난감을 포함한 장난감과 육아제품은 등재된 PAHs 중 어떤 PAHs 물질이라도 0.5mg/kg이상 함유한 경우, 일반 대중들에게 판매를 위한 시장 출시는 금지된다. 7. 5,6번 문단 내용은 본 규정의 적용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51. 다음의 프탈레이트류 (또는 이 물질을 커버하는 다른 CAS 및 EINECS 번호): (a)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1. 장난감 및 어린이보호 완제품 내에 물질 또는 가소화된 소재의 0.1 중량%를 초과하는 농도로 혼합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 가소화된 소재의 0.1중량%를 초과하는 농도로 이러한 프탈레이트를 포함하는 장난감 및 어린이보호 완제품은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2017.12.31

(DEHP) CAS 번호 117-81-7 EC 번호 204-211-0 (b) 다이뷰틸 프탈레이트 (DBP) CAS 번호 84-74-2 EC 번호 201-557-4 (c) 벤질 뷰틸 프탈레이트 (BBP) CAS 번호 85-68-7 EC 번호 201-622-7	4. 본 단락을 위해 "어린이보호 완제품" 은 어린이의 입장에서 수면, 휴식, 위생, 먹이거나 빨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든 제품을 의미할 것이다.	
52. 다음의 프탈레이트류 (또는 이 물질을 커버하는 다른 CAS 및 EINECS 번호): (a)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 (DINP) CAS 번호 28553-12-0 및 68515-48-0 EC 번호 249-079-5 및 271-090-9 (b) 다이-"아이소데실" 프탈레이트 (DIDP) CAS 번호 26761-40-0 및 68515-49-1 EC 번호 247-977-1 및 271-091-4 (c) 다이-n-옥틸 프탈레이트(DNOP) CAS 번호 117-84-0 EC 번호 204-214-7	1. 어린이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장난감 및 어린이보호 완제품 내에 물질 또는 가소화된 소재의 0.1중량%를 초과하는 농도로 혼합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 가소화된 소재의 0.1중량%를 초과하는 농도로 이러한 프탈레이트를 포함하는 장난감 및 어린이보호 완제품은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4. 본 단락을 위해 "어린이보호 완제품" 은 어린이의 입장에서 수면, 휴식, 위생, 먹이거나 빨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든 제품을 의미할 것이다.	2017.12.31
54.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DEGME) CAS 번호 111-77-3 EC 번호 203-906-6	0.1중량% 이상의 농도로 페인트, 페인트 박리제(paint strippers), 세척제(cleaning agents), self-shining emulsions 또는 바닥 방수제(floor sealants)의 구성성분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해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2018.12.31
55. 2-(2-부톡시에톡시)에탄올(DEGBE) CAS 번호 112-34-5 EC 번호 203-961-6	1. 3중량% 이상의 농도로 에어로졸 발생기 내 스프레이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 클리너의 구성성분으로써 일반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2. DEGBE를 포함하고 제1항을 준수하지 않는 에어로졸 발생기 내 스프레이 페인트와 스프레이 클리너는 2010년 12월 27일 이후부터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해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2018.12.31
56. 메틸렌다이페닐 디이소사이아네이트 (MDI) CAS 번호 26447-40-5 EC 번호 247-714-0 다음의 특정 이성질체(isomer)를 포함	1. 공급자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포장하지 않을 경우,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해 MDI의 농도가 0.1중량% 이상으로 혼합물의 구성성분으로써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a) 29/11/2006 # 26361에 공보로 발표된 개인보호장구 규정을 준수하는 보호 장갑을 포함 해야 한다.	2017.12.23

한다 (a) 4,4'-메틸렌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CAS 번호 101-68-8 EC 번호 202-966-0 (b) 2,4'-메틸렌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CAS 번호 5873-54-1 EC 번호 227-534-9 (c) 2,2'-메틸렌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CAS 번호 2536-05-2 EC 번호 219-799-4	(b) 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침해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보기 쉽고, 읽기 쉽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한다. “-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류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알려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 천식, 습진 또는 피부 문제들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이 제품과의 접촉(피부 접촉 포함)을 피해야 한다. - 이 제품은 적절한 가스 필터(즉, 표준 EN 14387에 따른타입A1가 있는 보호마스크가 사용되지 않는 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사용 되지 않아야 한다.” 2. 적용배제의 방법에 의하여, 제1(a)항은 핫멜트 접착제(hot melt adhesives)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57. 사이클로헥산 CAS 번호 110-82-7 EC 번호 203-806-2	1. 350g을 초과하는 포장 사이즈 내 0.1%중량 이상 농도로 네오프렌 기반 접착형 접착제의 구성성분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2. 사이클로헥산을 포함하고 제1항을 준수하지 않는 네오프렌 기반 접착형 접착제는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해 시장에 출시 되어서는 안 된다. 3. 물질 또는 혼합물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다른 공동체 법률을 침해하지 않고, 공급자는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해 시장에 출시되는 0.1중량% 이상 농도로 사이클로헥산을 포함하는 네오프렌 기반 접착형 접착제에 다음과 같이 보기 쉽고, 읽기 쉽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한다. “- 이 제품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이 제품은 carpet laying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018.12.23
58. 질산 암모늄 (AN) CAS 번호 6484-52-2 EC 번호 229-347-8	1. 18/03/2004 # 25452 공보에 발표된 농업용 화학비료사용규정에 명시된 높은 질소 함량의 질산암모늄 비료를 위한 기술적 조항들을 준수하지 않는 한, 고상비료(solid fertiliser), 순물질 또는 화합물로의 사용을 위해 질산암모늄과 관련된 질소가 28중량%를 초과하는 혼합물 내 물질 또는 물질 자체로써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2. 다음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질산암모늄과 관련된 질소 16중량% 이상을 포함하는 혼합물 내 물질 또는 물질 자체로써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a) 15/10/2002 # 24907 공보에 발표된 시민 사용 폭발물의시장출시 허가 및 검사규정에 따라 인가되거나 승인된 자연인 또는 법인을 포함하는 하위사용자와 판매자 (b) 풀타임이거나 파트타임 그리고 토지 크기와 반드시 관련 있는 것은 아닌 농사 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농부 본 단락을 위해: (i) “농부”는 농사 활동에 경험이 있고 협정 제299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법적 지위가 국내법에 의해 그룹과 그룹 멤버에게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경작지가 터키 내 위치해있는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자연	2018.12.23

	인이나 법인들의 그룹을 의미한다. (ii) “농사활동”은 수확을 포함하는 농산품의 생산, 재배, 농장에서 착유(milking), 동물 품종개량 그리고 동물 사육 또는 우수한 농업적/환경적 조건 하에 토지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c) 원예, 온실에서 식물 재배, 공원, 정원 또는 운동 경기장의 유지, 임업 또는 다른 유사한 활동과 같은 전문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59. 다이클로로메탄 CAS No 75-09-2 EC No: 200-838-9	1. 0.1중량% 이상의 다이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페인트 제거제 (paint strippers)는: (a) 2019년 12월 31일 이후로 일반대중 또는 전문가에게 공급하기 위해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된다. (b) 2021년 12월 31일 이후 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수 없다.	2017.12.23
60. 아크릴아미드 CAS No 79-06-1	1. 물질 또는 grouting 용도로 0.1중량% 이상이 함유된 혼합물의 성분으로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018.12.31
61. Dimethylfumarate (DMF) EC 210-849-0 CAS No 624-49-7	1. 완제품 또는 어떤 부품에도 0.1 mg/kg 이상 사용할 수 없다. DMF를 0.1 mg/kg 이상 함유한 완제품 또는 부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2017.12.23
62. (a) 아세트산페닐수은 EC No: 200-532-5 CAS No: 62-38-4 (b) 프로피온산 페닐수은 EC No: 203-094-3 CAS No: 103-27-5 (c) 페닐수은 2-헥사논산에틸 EC No: 236-326-7 CAS No: 13302-00-6 (d) 옥탄산 페닐수은 EC No: - CAS No: 13864-38-5 (e) 네오데카노에이트 페닐수은 EC No: 247-783-7 CAS No: 26545-49-3	1. 0.01wt%이상 함유한 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0.01wt%이상 함유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물질이 함유된 완제품 또는 부품을 시장에 출시해서는 안 된다.	2017.12.23
63. 납 CAS No 7439-92-1 EC No 231-100-4 및 납 화합물	1. 보석류 제품의 개별 부품(individual part)에 납(금속으로서의 납)을 0.05wt%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시장에 출시 할 수 없다. 2. 1번 조항의 용도: (a) 보석류 제품은 다음과 같이 보석과 모조 보석류 제품과 헤어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 팔찌, 목걸이와 반지; - 피어싱 보석류; - 손목시계와 손목보호대(wrist-wear); - 브로치와 단추(cufflinks); (b) 개별 부품(individual part)은 보석 제품 각각의 구성 성분 뿐만 아	2017.12.23

	나라 보석을 만드는 재료를 포함한다 3. 번 조항은 시장에 출시되거나 보석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다음의 경우, 1번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a) 19/03/2002 # 24700 공보에서 발표된 크리스탈 글라스 제품 규정의 부속서 I(categories 1, 2, 3, 4)에서 정의된 크리스탈 글라스 (b)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시계 내부 부품품; (c) 납 혹은 그 화합물,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 처리되지 않은 합성되지 않거나 재생된 원석 또는 준보석 (c) 적어도 500°C의 온도에서 용융되는 미네랄의 결합 또는 유리화, 신테링의 결과로 생성되는 유리질 혼합물(vitrifiable mixture)로 정의되는 에나멜 5. 1970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진 보석 제품에는 1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7. 일반 대중에게 공급되는 제품 또는 제품의 접촉 가능한 부품내에서의 납의 함유량 (금속으로써) 이 0.05wt% 이상이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아동의 입에 넣을 수 있는 경우 경우 시장 출시 및 사용을 금한다. 이 제한은 코팅 또는 비 코팅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한 제품 또는 제품의 접촉 가능한 부분으로부터의 납의 방출 속도가 시간당 0.05µg / cm² (0.05 µg / g / h와 동등)를 초과하지 않으며, 코팅된 제품의 경우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조건하에서 최소 2년 동안 방출속도가 이를 초과하지 않음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코팅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본 항의 목적 상, - 크기가 5cm 미만이거나 - 그 크기의 분리 또는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 에 제품 또는 제품의 접촉 가능한 부분을 아동이 입에 넣을 수 있다고 간주한다. 8. 유예의 방식으로 7항은 아래에 적용되지 않는다: (a) 1항에 포함된 보석 제품 (b) 19/03/2002 # 24700 공보에서 발표된 크리스탈 글라스 제품 규정의 부속서 I(categories 1, 2, 3, 4)에서 정의된 크리스탈 유리 (c) 납 및 납화합물 또는 이러한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로 처리하지 않은 비합성 또는 재생된 보석 및 준보석(7103의 GTiP code를 가진 것) (c) 최소 500 °C의 온도에서 용융된 광물의 융합, 유리화, 소결의 결과로 유리화된 혼합물로 정의되는 법랑질; (d) 열쇠와 자물쇠 (통 자물쇠 포함); (e) 악기; (f) 납(금속) 함유율이 0.05wt%를 초과하지 않는 황동 합금을 포함하는 제품 또는 제품 내 부품; (g) 필기구의 팁;	
--	---	--

	(g) 종교 관련 제품; (h) 휴대용 아연-탄소 전지 및 버튼셀 전지 (i) 24/08/2011 # 28035B 공보에서 발표된 포장폐기물관리규정, 29/11/2011 # 28157 공보에서 발표된 터키 식품 규제물질 및 식품접촉 재질, 22/05/2012 # 28300 공보에서 발표된 폐전기 및 전자장비 관리 규정의 범위내의 제품 10. 유예의 방식으로 7항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장에 최초 출시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4. 1,4-다이클로로벤젠 CAS No 106-46-7 EC No 203-400-5	1. 물질이나 혼합물이 화장실, 가정, 사무실 또는 다른 실내 공공 장소에 방향제 혹은 탈취제로 사용되기 위해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물질 또는 0.1 중량% 이상의 농도로 함유된 혼합물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2017.12.23
65. 무기 암모늄염	1. 셀룰로오스 Insulation 혼합물 및 셀룰로오스 Insulation 완제품 내에서 방출되는 암모니아 배출량이 3ppm by Volume ($2.12\text{mg}/\text{m}^3$) 이상인 경우, 시장에 출시될 수 없다. 시험방법은 아래 4항 참조. 공급자는 유기암모늄염을 포함하는 셀룰로오스 Insulation 혼합물의 최대 허용 가능한 loading rate를 두께와 밀도로 표현하여 수신자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유기암모늄염을 포함하는 셀룰로오스 Insulation 혼합물의 하위 사용자 (downstream user)는 공급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최대 허용 가능한 loading rate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단, 동 금지 규정은 셀룰로오스 Insulation 혼합물/완제품 생산과정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무기암모늄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1항의 하위 문구에 규정된 방출제한의 만족은 다음과 같이 채택된 CEN/TS 16516 기술표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a) 시험 기간은 28일이 아닌 최소 14일 이상이어야 한다. (b) 암모늄 가스 방출은 시험을 통해 최소 1일 1회 측정되어야 한다. (c) 시험기간 동안 어떠한 측정 시에도 방출 허용치를 넘어서는 안된다. (c) 상대습도는 50%가 아닌 90%이어야 한다. (d) 암모니아 가스 방출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e) 두께와 밀도로 표시되는 Loading rate는 시험에 사용되는 셀룰로오스 Insulation 혼합물 또는 그 제품의 샘플링 동안 기록되어야 한다.	2021.12.31
66. 비스페놀 A CAS No 80-05-7 EC No 201-245-8	Thermal paper 내 0.02중량% 이상의 Bisphenol A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2022.12.31